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NB0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9. 11. 29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달성복지재단에서 청소년 시설을 수탁관리하기 위해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1조 목적에 ‘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’를 ‘**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부응하고**’로 수정하여 대상을 명확화 함
- 나. 제4조 재단의 사업에 ‘**청소년 수련시설 운영**’을 추가함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타사항
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입법예고(2019. 10. 16. ~ 11. 5.) 결과 : 의견 없음
 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 - (6) 부서합의 : 교육청소년과와 합의되었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“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”를“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①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"재단법인 달성 복지재단" 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을 설립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①----- ----- <u>및 청소년 보호육성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조 (재단의 사업) ①(생략) 1. ~ 5. (생략) <u><신 설></u> 6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	제4조 (재단의 사업) ①(현행과 같음) 1. ~ 5.(현행과 같음) 6.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7. -----

참고**상위 및 관계법령****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**

제21조(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) ① 출자 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